

사무국 운영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한국민간투자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정관□제32조 제5항에 의거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원

제2조 (직원 임명) 학회의 직원은 사무국에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사무국장, 사무원을 말하며, 직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로 임명한다.

제3조 (직원의 직무)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사무원은 사무국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직인보관, 공문수발 및 문서관리, 회원관리, 주요 회의록 작성, 통장 및 회계관리, 학회 재물관리, 경조사관리, 학술행사, 학회지 배포 등
2. 기타 감독기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및 유관기관에 대한 관련 행정업무 수행 등

제4조 (직원의 처우) 직원의 급여 등 처우와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장 사무국 업무

제5조 (회원관리) 직원은 학회□정관□제5조 제1항에 따른 학회 회원의 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종류, 회원 번호, 성명, 학력, 경력, 직장, 직위, 주소, 연락처, 학회 가입년월일 등 회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신상변동 사항 및 학회□정관□제9조에 관한 사항
3. 회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비관리) ① 직원은 학회□정관□제8조에 따라 수납된 회비 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비의 수납은 과년도 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미납분을 처리하며, 종신 회비는 과년도 회비의 미납분이 없을 경우 수납할 수 있다.
- ③ 직원이 단체회비를 수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직원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해외 장기체류 유무를 확인하여 그 명단을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 및 재무관리) ① 직원은 학회□정관□제36조에 따른 회계연도의 이사회, 상임이사회, 총회와 제44조에 따른 업무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학회□정관□제31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회□정관□제33조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회□정관□제35조에 따른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회□정관□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 예산·결산·기부금 및 보조금·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학회□정관□제45조에 따른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
- ② 직원은 예·결산 관련 서류 및 회계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내역 및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월초에 전월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학회지 배포) ① 직원은 학회지가 출간되면 제2항의 배포기준에 따라 배포처에 학회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학회지 배포를 위하여 발송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배포처 및 배포기준을 매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및 내규관리)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및 명부를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편집위원회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

제10조 (연구용역 관리 및 집행) 직원은 학회 명의로 연구용역을 입찰하거나 계약할 경우 사전적격심사 관련 제반 서류를 지원하고,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학회 연구용역 시행규정 제3조에 따라 학회기여금과 원천징수액 등 세금 공제한 금액을 당해 용역의 연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연구진에게 지급한다.

제11조 (홈페이지 관리) 직원은 민간투자학회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콘텐츠 업데이트 : 보도자료, 공지사항, 행사정보 등 최신내용 반영
2. 디자인 및 레이아웃 관리 : 홈페이지 디자인 유지 및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개선
3. 통계분석 및 보고 : 회원관리 현황, 방문자수 등 사용자 행동 분석 및 보고

부 칙

본 내규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